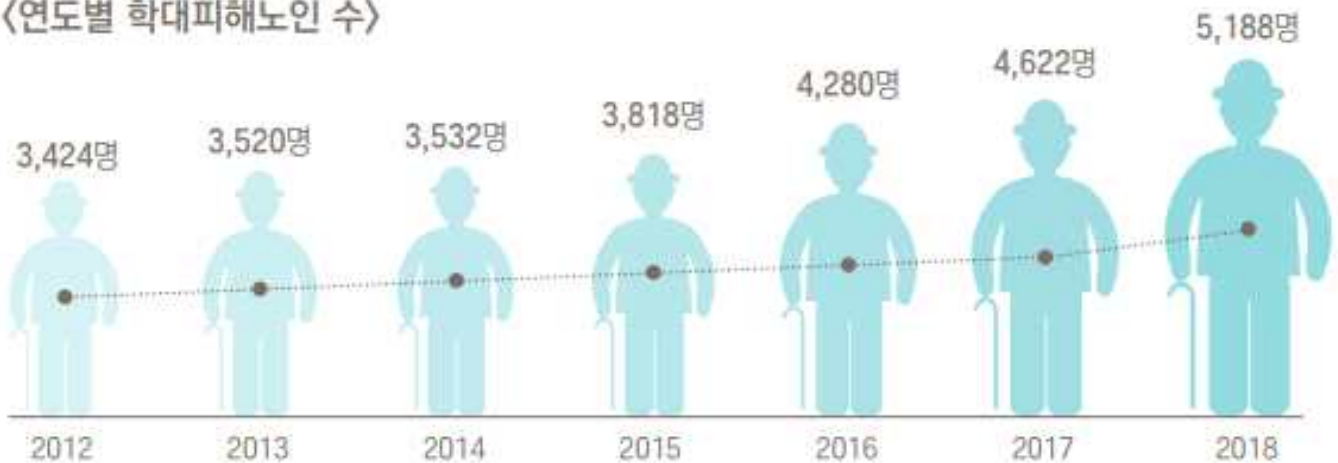


## Q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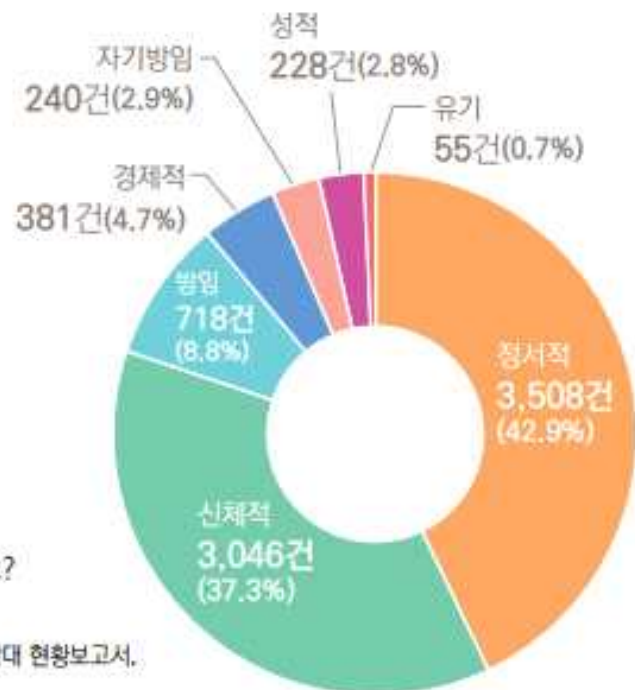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



### 〈노인학대 유형〉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오늘 하루,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이겠지...’라는 생각에  
모른척 하지는 않았나요?
-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나요?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9).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노인학대의 특성

- ❶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 ❷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 ❸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 ❹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예) 신체 구타·억압·위협, 밀치거나 넘어뜨림, 강제로 가동, 이동을 통제함, 생존유지를 위한 식사·잠치·약물 등을 단절함, 약물 및 주사 강제 복용·투입, 강제노동 등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헐뜯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예) 반말, 눈을 맞추지 않음, 욕설 등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 성관계 강요 및 시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등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 노인의 동장을 동의없이 갈취,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노인의 재산사용을 통제할 등



## 방임(자기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예) 노인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음, 노인이 끼니를 계속 걸러 아람 등(자기방임: 스스로 식사거부, 비위생적인 집안환경 등)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의 사설입소 후 보호자와 연락두절, 낯선장소에 버림 등



# 노인학대 처벌기준



| 법률            | 내용                                                                                                                                                                                                                                                                                                                                                                                                | 처벌                                                                                                  |
|---------------|---------------------------------------------------------------------------------------------------------------------------------------------------------------------------------------------------------------------------------------------------------------------------------------------------------------------------------------------------------------------------------------------------|-----------------------------------------------------------------------------------------------------|
| 법칙<br>제55조의2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br>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법칙<br>제55조의3  | <div>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div> <div>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div> <div>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div> <div>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div> <div>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신설)</div> <div>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div> <div>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때</div> | <div>5년 이하의 징역 또는<br/>5천만원 이하의 벌금</div> <div>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해 시)<br/>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br/>(사망 시)</div> |
| 법칙<br>제55조의4  | <div>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대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div> <div>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노인학대 금지행위 관련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div>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br>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법칙<br>제57조    | <div>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div> <div>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div>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br>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과태료<br>제61조의2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외 타 법률 적용 가능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노인학대 신고방법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노인학대 예측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 신고방법

### 노인학대 신고접수



24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국번없이)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하여 신고

### ?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나요?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